

제2023-1호

## 행정대집행 영장

성명(단체명): 미상 귀하

주소: 미상

귀하는 인천광역시 서구 **시천동 110-3** 인천광역시 소관 행정재산을 불법 무단점유물(평상, 천막)을 설치하여, 2023년 6월 12일(월)까지 원상회복(철거)하도록 계고서를 송달하였으나,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우리 서구청에서 부득이 아래와 같이 대집행함을 「행정대집행법」 제3조 제2항에 따라 통보합니다.

※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「행정심판법」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- 아 래 -

대집행 일시	행정대집행 책임자			행정대집행 비용(추산액)
	소속	직위(직급)	성명	
2023년 7월 5일~ 2023년 7월 7일 (기간 중 1일)	서구청 도로과	도로과장	박정인	소요비용 추후 부과
	서구청 도로과	건설행정팀장	송세종	
	서구청 도로과	지방행정주사보	최상훈	

2023년 6월 13일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